

DDA 농업협상과 UR 협상*

송 주 호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한동안 협상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쟁점을 타결하면서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출범한 후 햇수로 7년이 지난 금년 2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세부원칙(모델리티) 1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3개월여 동안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5월에 2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이후 각국은 또다시 3차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DDA 협상의 진행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986년 출범하여 1994년 타결된 UR 협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과 UR 협상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DDA 협상을 전망해 본다.

한국농업에 있어서 최초의 전면적인 개방인 UR은 GATT체제에서의 8번째 협상이었고, DDA는 9번째 협상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다르다.

1. DDA 협상 개요

한국 농업에 최초의 전면적인 개방이라는 시련을 안겨준 UR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의 8번째 협상이었고, DDA 협상은 9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1948년 창설된 GATT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로 전환되었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서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크게 다르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출범되었고 개도

* 본 내용은 DDA 및 UR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jhsong@krei.re.kr, 02-3299-4187)

국의 개발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도하개발의제(DDA)”로 명명되었다. 과거에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라운드라는 어감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제”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이 붙여졌다.

DDA 협상의 범위는 UR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하며 각 분야별로 협상이 나누어 진행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국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상에서도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협상이 가장 뜨거운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2. UR 과 DDA협상 추진경과 비교

UR 농업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협상이 의욕적으로 출범한 후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게 되면 협상그룹의장은 나름대로 그 동안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내용과 방향을 종합한 모델리티(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협상 쟁점별로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이가 많기 때문에 모델리티 초안은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나라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 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협상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기한 내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협상기한은 연기된다.

이러한 과정은 UR과 DDA 모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UR 당시에는 농업부문이 GATT에서는 처음으로 협상분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안을 제시하는데에만 UR출범 후 3년 9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DDA 협상에서는 이미 농업부문이 UR 당시의 기설정 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2000년 1월부터 이미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차 초안 제시가 DDA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나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의장 초안 제시 이후 UR에서는 1990년 브라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고, DDA에서는 2003년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각료회의가 결렬되면 협상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회원국들은 WTO 총장에게 협상의 완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그 이후 다시 협상은 빠르게 진전되고, 세부 쟁점들이 하나씩 타결되면서 주요국 간에 마지막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면 협상은 종결되게 된다. 아래 표는 그러한 협상 진전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08년 5월말 현재 DDA 농업협상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한 절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핵심 쟁점들은 각료회의에 넘겨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R농업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협상이 출범된 후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면 협상그룹의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내용과 방향을 종합한 모델리티(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게 된다.

표 1 UR 과 DDA 협상의 진전 경과 비교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텔)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경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랏셀 각료회의 결렬) *브랏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 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1992.11월 (미·EU 블레어하우스 합의)	2003.2월 (하빈슨 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의 시한 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2008.5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쟁점타결	1993.12월.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2008. 3)

3. UR협상과 DDA협상의 주요내용 비교¹⁾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를 대폭 삭감하되 민감품목 등 융통성 부여

UR농업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DDA농업협상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DDA협상이 UR협상보다 시장 개방폭과 보조금 감축 폭이 훨씬 크다. 예컨대 UR 당시 관세 감축율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 36%이고

1)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2008년 5월 20일 배포된 팔코너의장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향후 협상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품목별로는 최소 15%이었는데, DDA에서는 평균 54%, 품목별로는 관세구간별로 다르지만 고관세 품목(세율이 75% 이상인 품목)의 경우 [66% -73%]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으로 보면 1.5배이지만 고관세 품목의 경우 4배 이상 감축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UR에서는 부속서 5항에 관세화조치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관세화조치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을 두었고 우리나라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DDA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게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²⁾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 감축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에게는 별도로 특별품목³⁾(Special Products)을 인정하여 역시 관세 삭감을 적게 하거나 아예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도 이번 DDA 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관세 상한에 대해서도 UR 당시에는 국내의 가격 차이를 그대로 관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관세 상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각국별로 종가세 기준으로 500%가 넘는 품목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DDA에서는 관세 상한을 두지는 수출국들의 끈질긴 주장이 있었으나 팔코너 의장 초안에는 직접적인 관세상한 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이 전체 세번의 4%를 넘을 경우에는 민감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쿼터를 추가로 소비량 대비 0.5%를 증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R에서는 당시 관세화하고 이행계획서에 명기한 품목에 한해 특별긴급관세제도(SSG: Special Safeguard)를 허용하여 수입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관세를 단기간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DDA에서는 SSG제도는 모두 철폐하거나 혹은 전체 세번의 1.5% 이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DA에서는 과거 SSG를 활용하지 못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개도국들에게는 SSG와 유사한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SSM조치 발동시 관세인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동가능 품목수 등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관세형태에 대해서도 UR 당시에는 종가세 이외에도 종량세, 혼합세 등이 큰 제약없이 활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관세형태를 단순화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종가세만 인정할 지,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관세를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UR 당시 76개 세번에 대해 종가세와

UR 농업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DDA 협상이 UR 협상보다 시장 개방폭과 보조금 감축 폭이 훨씬 크다.

- 2)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율 구간별 관세감축공식보다 1/3 내지 2/3 정도 작게 감축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쿼터로 설정해야 하는데, 품목수를 몇 %나 인정할 지, 쿼터증량 폭을 얼마나 할 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 3) 특별품목은 개도국에 한해 식량안보·생계유지·농촌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표(Indicator)에 관련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의 대상 한도와 관세감축의 폭에 대해 쟁점으로 남아 있다. G33그룹은 특별품목의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감축의 면제는 불가하다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종량세 중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DDA에서 관세단순화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대작물은 최빈 개도국들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하여 UR 당시에 선진국들은 열대작물의 완전자유화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었다. DDA에서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여건이 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개도국은 열대작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감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 대상품목을 나열하고 품목수도 대폭 늘렸다. 다만,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 삭감은 특혜잠식⁴⁾을 걱정하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표 2 시장접근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시장 접근	관세 감축율	선진국의 경우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선진국의 경우 평균 54%, 구간별 감축(50%~73%)
	관세 감축 예외	부속서 5항(관세화 유예)	민감품목, 특별품목(개도국) 신설
	관세상한	없음(관세화)	100%초과품목이 전체의 4%이상일 경우TRQ 추가 증량
	SSG	관세화 품목에 대해 모두 인정	모두 철폐, 혹은 전체 세번의 1.5%만 인정 ※ SSM 신설(개도국)
	관세 형태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인정	관세 단순화
	열대작물	선언적 규정	목록확대, 관세 추가 삭감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을 높이고 품목별 안도를 설정

국내 보조금의 경우에도 UR 당시에는 전체 감축대상보조의 20%를 감축하도록 했지만, DDA에서는 구간을 나누어 감축율을 높였으며, 품목별로 상한을 두고 있다.

국내 보조금의 경우에도 UR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전체 감축대상보조(AMS)의 20%를 감축하도록 하였지만 DDA에서는 구간을 나누어 그동안 AMS를 많이 지급해 온 EU는 AMS의 70%를 감축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은 60%, 그 밖의 선진국들은 45%를 감축하게 하였다. 또한 UR 당시에는 전체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는 품목별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DDA에서는 품목별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이번 DDA에서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bsidy)이란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AMS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Blue Box금액을 모두 합하여 전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점이다. 감축율은 OTDS 금액의 규모

4)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들(ACP: African, Carribean, Pacific)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로 EU에 바나나, 커피 등 열대작물들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를 특혜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DA 협상에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이러한 특혜의 크기가 축소되므로 이를 특혜잠식이라고 한다.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50-50]% 내지 [75-85]%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로 감축이 면제되는 Blue Box의 경우 UR에서는 상한이 없었으나 DDA에서는 전체 생산액의 2.5% 이내로 상한선을 두었다. 다만, UR당시에는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의 직접지불만 Blue Box로 인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하의 직접지불을 새로운 Blue Box에 신설함으로써 최근 미국이 도입한 경기상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을 Blue Box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감축에서 면제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경우에도 UR 당시 선진국들은 농업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인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를 대폭 낮추어 [50-6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국내보조 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국내 보조	AMS 감축율	선진국 기준 20% 삭감 품목별 한도 없음	45%~70% 감축, 품목별 한도 OTDS 구간별 [50%~85%]삭감
	Blue Box	BB 사용 한도 없음	신규BB 인정, 전체한도를 농업생산액의 2.5% 로 한정
	de- minimis	선진국 기준 생산액 대비 5% (품목특정, 불특정)	[50%~60%]감축

수출경쟁분야 대폭 강화

수출보조는 UR 당시 선진국은 금액기준으로 36%를 삭감하고 물량기준으로는 21%를 삭감(개도국은 2/3수준)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마케팅비용과 운송비용에 대한 보조는 202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신용의 경우도 UR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출신용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신설하고 최대 상환기간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한층 강화하였다.

수출보조는 UR 당시 선진국은 금액기준의 36%를 삭감, 물량 기준으로는 21%를 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2013년까지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수출보조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수출 보조	감축율	금액 36% 물량 21% (개도국은 2/3 수준)	2013년 까지 철폐 (개도국은 2016년 철폐)
	수출신용	수출보조의 우회방지	규정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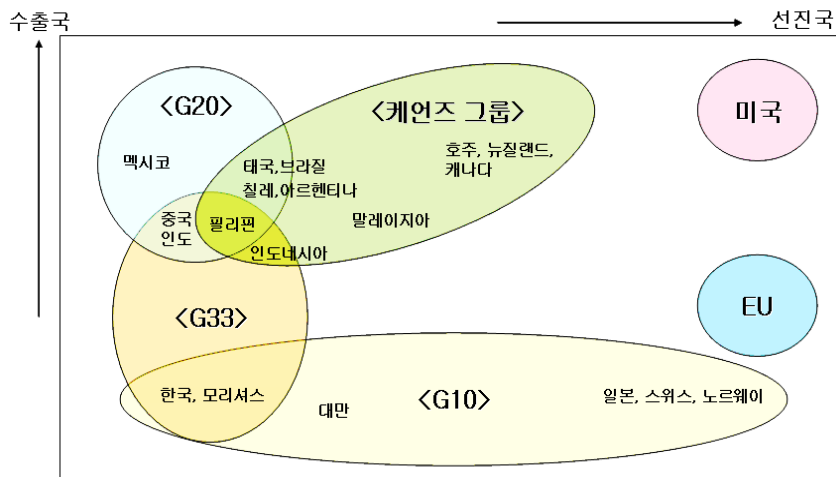
UR 당시 이행기간은 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이었으나, DDA에서는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이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행기간은 줄어 들고 참여자는 많아져

UR 당시에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은 6년이고 개도국은 10년이었으나 DDA에서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으로 단축되었다. 아울러 관세나 보조금 감축방법도 UR 당시에는 이행기간 동안 균분 감축하였는데 DDA에는 이행 첫해부터 대폭 감축(down payment)하도록 하여 이행부담을 크게 늘린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UR 당시에는 미국과 EU가 협상을 주도하였고,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 Trade Concern)을 주창하는 수입국 그룹 등이 어느 정도 단합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DDA 협상에서는 인도, 브라질, 중국 등 개도국들의 발언권이 크게 증대되고 또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이 많은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G10(농산물 수입국 모임: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등), G33(특별품목 주창그룹: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그룹에 속해 있으며,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의 모임인 G20(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또 다른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과는 별도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특별히 이런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안을 하고, 가끔 그룹 간 중재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다.

그림 1 DDA 협상의 역학구조



개도국에 대한 대우는 더 강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는 개도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GATT 출범부터 인정되었으며, UR 농업협정에서도 관세감축이나 보조금 감축, 이행 기간 등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감축약속을 이행하도록 한 바 있다. DDA협상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각 조항마다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며, UR 당시의 우대조건이 DDA에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DDA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만큼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서 특별품목, SSM 제도는 개도국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능성 여부가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GATT 체제에서의 개도국 지위의 결정은 특정한 법적절차나 기준이 없이 회원국의 자기 선택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R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DDA 출범 초기 WTO의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조항에 대해 검토하면서 개도국 분류 및 졸업문제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으나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OECD에서도 개도국 세분화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려다가 우리나라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DDA에서는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모델리티에서는 일부 조항⁵⁾에 대해 “능력이 되는 개도국(in a position to do so)”,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는(declaring themselves to be in a position to do so)”, 혹은 “희망(wishing)하는 개도국” 들은 선진국들과 같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단계가 높은 일부 개도국들에게 자발적인 추가 부담을 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GATT출범부터 인정되었으며 UR 농업협정에서도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감축을 이행하도록 한 바 있다. DDA협상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각 조항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4. 양우 전망

WTO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2차 수정안을 토대로 5월 26일 주간부터 각국의 본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쟁점이 압축되면 농업과 비농업을 함께 논의하는 부문 간 협의(horizontal process)를 개최하여 부문 간 균형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고,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압축된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WTO 사무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비농산물 부문(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이가 현격해서 거의 진전이

현재 농업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 반해 비농산물 부문 협상이 진전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5) 경사관세의 시정,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 감축,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취약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개선, 고관세품목의 TRQ 추가 증량조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5월 22일 제정된 2008년 미국 농업법이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어 금년 내 협상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농업, 비농업(NAMA) 이외에도 규범(Rules) 분야에 대한 협정문도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 협상, 지리적 표시 등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추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부문 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5월 22일 미국에서 제정된 2008 농업법이 DDA에서의 농업보조금 감축노력과는 반대로 오히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금년 내 협상 타결을 바라는 미국의 협상 주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은 7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1993년 12월에 협상이 종료되었다. 2008년 6월 현재로 6년 7개월 동안 끌어온 DDA 협상이 UR 협상보다 빨리 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농림수산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2008. 2.

임송수, 김상현, WTO 개도국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60. 2003.

DDA 농업협상 팔코너 모델리티 2차 수정안, 2008. 5.

UR 농업협정문, 1994.1.

Washington Trade Daily, "Ag Talks Move Along", 2008.6.4.